

# 출입관리지침

일부개정 2022.11. 1.

- 제5조(출입금지 및 출입제재)** ① 출입규정 위반자(한수원 직원외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별표4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출입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한수원 직원을 포함하여 조치한다.<개정 2020.7.7, 2021.2.23.>
- ②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한수원 직원외 기타 인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한수원 1등급시설 등급II방호구역) 지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원자력발전소외 지역에는 일시출입 자격으로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20.7.7, 2021.2.23.>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법」 제164조 ~ 제16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③ 신원조사 결과 특이자로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안담당 부서장이 지도관리서약서(서식 23)를 청구한 후 **일시 또는 수시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지도관리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한수원 1등급시설 등급II방호구역) 지역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원자력발전소외 지역에는 일시출입 자격으로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22.11.1.>
- ④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그 제재기간 내에 있는 자(대표자, 대리인 및 계약관리 실무담당자). 다만, 기존 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담당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7.7, 2021.2.23.>
- ⑤ 제1항에 따른 출입제재 기간은 별표4의2에 따른다<개정 2020.7.7, 2021.2.23., 2022.11.1.>
1. 심각, 중대, 보통 수준의 출입규정 위반에 따른 출입금지 기간을 산정할 때 출입금지 기준일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출입금지를 확정하여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일자부터 산정한다.
  2. 심각, 중대, 보통 수준의 출입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보안담당부서는 필요시 사유발생일 또는 보안부서에서 인지한 날로부터 출입금지를 확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 출입규정 위반자에게 즉시 해당시설 출입을 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출입금지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
  3. 경미 수준의 출입규정 위반에 따른 **출입제재** 기간은 **일시출입자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상수시출입자의 경우 출입증 회수일로부터** 산정한다.
- ⑥ 제1항에 의거 중대 또는 심각한 출입규정 위반으로 1년을 초과하는 출입금지를 제재 받은 해당자가 소속된 협력회사 대표는 소속직원이 출입금지를 처분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제외) 보안사고 재발방지 서약서(서식28) 및 출입위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부서 승인 후 정보보안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7, 2021.2.23.>
1. 정보보안부서는 출입위규 재발방지대책 추진 실적을 불시 점검할 수 있다.
  2. 정보보안부서는 보안사고 재발방지 서약서(서식28) 및 출입위규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

발방지대책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협력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의 출입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⑦ 삭제<2021.2.23.>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한수원 직원외 기타 인원)는 해당 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효력은 한수원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20.7.7.,2021.2.23.>

1. 시설별 보안위원회 결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자로서 출입금지 처분기간내에 해당하는 자
2. 한수원 업무관련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⑨ 보안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거 1년을 초과하는 출입금지를 조치할 때에는 시설별 보안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금지 대상자에게 출입제한 사유 및 출입금지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출입금지 대상자는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서(서식22)를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장에게 제출(우편제출일 경우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보안담당부서장은 7일 이내에 소명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재고지 하여야한다.<개정 2020.7.7, 2021.2.23.>

⑩ 삭제<2021.2.23.>

⑪ 제1항에 따른 출입제재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불이익 처분 및 민·형사상 조치에 면책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개정 2020.7.7, 2021.2.23.>

# 출입규정위반 적용기준

## 1. 용어 정의

- 가. 심각 : 보안 위해가 심각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중대 : 유사 보안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다. 보통 :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 라. 경미 : 단순 출입절차 미준수 행위

## 2. 위반내용별 세부 처리기준

항목	위반내용	적용기준				
		심각	중대	보통	경미	
출입절차 위반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 또는 경비 인력을 사기·기망하는 방법으로 입소한 자 또는 입소를 시도한자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경우	○			
		원자력 발전소 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방호구역)		○		
		원자력본부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I방호구역) 및 한수원 출입통제2·3등급시설의 보호지역			○	
	출입증 대여(양도 포함) 또는 경비인력을 사기·기망하는 방법으로 허가자를 입소시킨 자 또는 시도한자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경우	○			
		원자력 발전소 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방호구역)		○		
		원자력본부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I방호구역) 및 한수원 출입통제2·3등급시설의 보호지역			○	
	용도가 다한 본인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입소한 자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경우		○		
		원자력발전소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방호구역)			○	
		원자력본부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I방호구역) 및 한수원 출입통제 2·3등급시설의 보호지역				○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 지역(출입통제1등급시설 등급II방호구역)에서 출소한 자	과실				○
	퇴직·전출·휴직·출입증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 발생시 절차 위반	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출입권한 반납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동행규정을 위반하고 임의 입소하여 사고 유발 또는 대외기관 적발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경우		○			
	과실				○	

항목	위반내용		적용기준				
			심각	중대	보통	경미	
출입절차 위반	용도가 다한 소속직원의 출입증을 기한내 반납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협력회사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출입증을 이용하여 제한지역(원자력본부 지역 등)에 출입					○	
	출입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거부					○	
	출입증 분실					○	
	출입증 발급신청 및 승인기준 절차 위반					○	
	출입규정 위반 재발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협력사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	
시설 위해	한수원 보안시설 및 보안장비의 손괴	직접 가담자		○			
		동조 또는 방조자			○		
	보안관계자(경비근무자, 출입담당자 등) 업무방해	보안관계자에게 상해(진단 4주이상)를 입힌자		○			
		보안관계자에게 상해(진단 1주이상) 또는 성희롱을 가한자			○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구두로 모욕,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재발방지 기준** 미충족 (출입금지 3개월 이하 적용)			○*	
			재발방지 기준** 충족				○
		육체적으로 모욕,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재발방지 기준** 미충족 (출입금지 4개월 이상 적용)			○*	
			재발방지 기준** 충족				○
	한수원 보호지역내 무단 침입 또는 점거	제한(통제)구역			○		
		제한지역				○	
	한수원 보호지역을 무단으로 촬영 유포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경우			○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원자력발전소 지역 등)				○	
한수원 보호지역을 무단으로 촬영 보유	제한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원자력본부 지역 등)					○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원자력발전소 지역 등)				○		
휴대폰 카메라 통제 보안앱 및 보안스티커·보안팩을 고의 제거						○	

항목	위반내용		적용기준			
			심각	중대	보통	경미
반출입 절차 위반	도면, 기술정보, 중요 일반문서, 일반물품 반출 위반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회적 물의 야 기 또는 회사에 피해를 끼친경우	○			
		무단으로 반출 시도	고의		○	
			과실			
	개인물품(통제물품에 한함)					○
	통제물품 반입위반	고의			○	
		과실				○

※ 출입규정위반 내용이 여러 항목에 중복된 경우 상위 처리기준에 따라 출입금지 조치를 적용

\* '보통' 적용 상세기준

-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구두로 모욕,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로서 재발방지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출입금지 보통(1~3개월) 적용
- 육체적으로 모욕,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로서 재발방지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출입금지 보통(4~6개월) 적용

\*\* 재발방지 기준

- 1회차: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본인 확인)시 기준 충족('경미' 적용)
- 2회차: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본인 및 소속부서장 확인)시 기준 충족('경미' 적용)
- 3회차이상: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과 관계 없이 기준 미충족 ('보통' 적용)

# 적용기준별 출입제재

## 1. 심각, 중대, 보통

구분 제재내용	심각	중대	보통
출입금지	적용기간 : 1년~영구 적용시설 : 한수원 모든 시설	적용기간 : 6개월~1년 적용시설 : 한수원 모든 시설	적용기간 : 1개월~6개월 적용시설 : 한수원 모든 시설

- ※ 심각, 중대, 보통 수준의 출입규정 위반에 따른 출입금지 기간을 산정할 때 출입금지 기준일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출입금지를 확정하여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일자부터 산정한다
- ※ 심각, 중대, 보통 수준의 출입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보안담당부서는 필요시 사유발생일 또는 보안부서에서 인지한 날로부터 출입금지를 확정하여 시행하기 전까지 출입규정 위반자에게 즉시 해당시설 출입을 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출입금지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
- ※ 한수원 직원 위규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되도록 감사부서에 조사의뢰 할 수 있다.

## 2. 경미

구분	상·수시 출입자	일시출입자
제재내용	한수원 직원 : 출입증(인원 및 차량) 회수 3일간/건 (또는 봉사활동 3회/건) 협력사 직원 : 상수시 출입증(인원 및 차량) 회수 3일간/건	해당시설 출입금지 (3일간/건당)
적용시설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

- ※ 적용기간 : 사유발생일(일시출입자) 및 출입증 회수일(상수시출입자)로부터 산정한다.
- ※ 한수원 직원 제재는 1년 이내 시행하여야 하며, 제재내용 불응시 감사부서에 조사의뢰 할 수 있다.